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안내(7.1.부터 시행)

1. 항상 지방계약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정부에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통보하오니, 시·도 및 교육청에서는 시·군·구, 교육지원청,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 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7월 1일부터 해당 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 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 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 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 대전광역시장(회계재산과장), 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회계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회계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재무행정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관리과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예산재정과장), 재정경제부장관(계약정책과), 조달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전기공사협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주무관

위형복

행정사무관

대결 2026. 6. 30. 회계계약제도 전결

홍성권

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계약제도과-4325

(2026. 6. 30.)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6

팩스번호 044-204-8967

/ whb1209@mail.go.kr

/ 대한민국 공개